###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87

발의연월일: 2021. 5. 26.

발 의 자: 권성동・김희국・류성걸

서병수・서일준・윤창현

윤한홍 · 임이자 · 태영호

홍문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연구목적, 유적의 정비사업 또는 멸실·훼손의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, 현행법상 법적 규정이 없어 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.

이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보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·보수·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만 허용하고 있어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법률의 허용행위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규정하여 문화유적 보존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7조제1항제5호).

법률 제 호

##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1항제5호 중 "문화재"를 "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, 문화재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7조(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)        | 제7조(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)  |
|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         | ①                  |
|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고는 건축물의 건축, 인공구조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,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토지의 형질변경, 토석(土石)의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하여서는 아니 된다.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. ~ 4의2. (생 략)          | 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 |
| 5. <u>문화재</u> 및 전통사찰의 복원 | 5.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|
| ·보수·이전 및 그 보존관리          |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 단서  |
| 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         | 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,    |
| 통사찰과 관련된 비석, 기념          | 문화재                |
| 탑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의 설치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6. ~ 10. (생략)            | 6. ~ 10. (현행과 같음)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|